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06호 2018. 5. 3.(목)

고 시

제2018 - 59호 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제2018 - 484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및 어업권 소멸 공고4
- 제2018 - 492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재공고5
- 제2018 - 49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1
- 제2018 - 514호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2
- 제2018 - 52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7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5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38-1 외 1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55-860-3472 ~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38-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460	20180424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힌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86-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2	20180410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힌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33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연로 230	2018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49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연로 1007	2018041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548-2, 54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375-26	20180409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음리 110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음로 188번길 21-10	20180413	남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95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연로 679번길 11-7	20180410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차면리 53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남해대로 3816번길 75-14	20180418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982, 976-1, 98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230번길 47-16	20180419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448-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75번길 78	20180425	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7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1길 34-17	20180419	미조리에 있는 유인도. 섬의 형상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새섬이라고도 함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6번나길 22	20180406	화전로 96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790번길 38-4	20180413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484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및 어업권 소멸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285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설천면 노량지선	65,000	2018.04.20 ~ 2028.04.19	남해군 설천면	노량어촌계	2018.04.20	재개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72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설천면 노량지선	85,700	2008.04.20 ~ 2018.04.19	남해군 설천면	노량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18 - 492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재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급경사지 정비 1식(L=75.0m, H=7.0m)

1) 토 공

- 흙깎기(토사) : 1772m³ ○ 흙깎기(풍화암) : 71m³
- 터파기(토사) : 309m³ ○ 터파기(풍화암) : 28m³ ○ 터파기(연암) : 3m³
- 되메우기(다짐) : 28m³ ○ 벌개제근 : 724m³ ○ 기존구조물깨기 1식

2) 배 수 공

- 배수관로(∅600mm) : 27.5m
- U형측구(500x500) : 32m ○ U형측구(500x600) : 32m
- 옹벽측구(0.5x0.5m) : 69m

3) 구조물공

- 합벽식옹벽(H=4.0~7.0m) : 75m ○ 석축쌓기(H=1.5~2.0m) : 73m
- 조경석쌓기(H=0.7~3.6m) : 50.6m

4)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20cm) : 4735㎡

5) 부 대 공

- 가설사무소 1식 ○ 중기운반 1식
- 자재운반 1식 ○ 기타 부대시설 1식

라.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6-2번지 외 8필지 / 2,426㎡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 4. 25. ~ 2018. 5. 9.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8년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협의(계약체결)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대상	현재	총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내용	
1	남해	고현	남치	156-2	전필	대	대	8	8	남해군 남해읍 학전로	박남0				
2	남해	고현	남치	156-1	전필	도	도	76	76	남해군 남해읍 학전로	박남0				
3	남해	고현	남치	157	전필	대	대	114	1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박연0		국민건강보험공단창원지사	압류	
4	남해	고현	남치	158-1	전필	도	도	9	9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조재0				
5	남해	고현	남치	166	166-3	전	전	504	3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	박한0				
6	남해	고현	남치	158	전필	대	대	249	249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조재0				
7	남해	고현	남치	167	167-1	잡	잡	172	14	부산광역시강서구	조정0				
8	남해	고현	남치	산123	산123-5	임	임	2,587	1,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박성0				
9	남해	고현	남치	산122	산122-1	임	임	1,091	211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박지0				
계								4,810	2,426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p>○ 대상 토지 또는 물건:</p>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고

2018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49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신호0	주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하천명		대인대끝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창선면 동대리 1027번지		
	면적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4. 25. ~ 2019. 4. 24.		
	목적 및 사유	농가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18 - 514호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남해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하고자 「남해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청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 용어 정의 (안 제2조)
- 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지원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5월 18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32,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860-32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서 남해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남해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52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이정0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하천명	안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이동면 용소리 891번지		
	면적	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5. 1. ~ 2019. 4. 30.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관로 매설		